

대학원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대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진리, 창조, 봉사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 및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교수하며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과정 및 정원

제 2 조(명칭)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선교복지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8.9.1, 2008.11.15, 2013.11.1, 2014.10.1>

제 3 조(과정)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및 연구과정을 두며, 경영대학원과 선교복지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개정 2008.9.1, 2008.11.15, 2013.11.1, 2014.10.1>

제 4 조(계열과 정원) 각 대학원에 설치한 과정의 계열학과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9.1, 2008.11.15, 2009.9.1, 2009.11.13, 2012.10.26, 2013.11.1., 2014.10.1., 2015.10.01., 2017.12.01., 2018.11.16>

제 3 장 입 학

제 5 조(입학 및 전형시기) ①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3-2-1-2 제2장 대학원

② 입학전형은 매 학기 중 수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입학자격) ①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학생 입학 및 등록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9.1>

제 7 조(입학전형 및 방법) ① 입학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구술시험을 실시하되, 유형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③ 입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입학전형내규」에 따른다.

제 8 조(입학절차)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 조(재편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는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가 편입학을 원할 경우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정부가 법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5.10.01.>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④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⑤ 외국인학생 재·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제 6조 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9.1>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 10 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각 학위과정별로 수료하지 못한 자는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1 조(휴학 및 기간) ① 학생이 질병, 병역, 임신·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4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8.09.01.>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해당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질병, 병역, 임신·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1., 2018.09.01.>

제 12 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4 제2장 대학원

제 13 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의 등록기간 중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8.09.01.>

제 14 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수업, 교과, 학점, 성적, 수수료

제 15 조(수업 및 재학년한) ①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 수업년한은 4학기로 하며, 선교복지대학원은 5학기로 한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업년한은 4학기로 한다. 단, 학·석사연계과정은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9.1., 2014.10.1., 2017.09.01.>

② 대학원 학위과정별 재학년한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선교복지대학원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박사과정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이수교과)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각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의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7 조(수료학점)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2. 경영대학원과 선교복지대학원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0학점 이상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1.19, 2008.11.15, 2013.11.1., 2014.10.1.,

2017.09.01.>

제 18 조(취득학점) ① 각 대학원 석사과정은 매 학기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② 타 전공 입학생의 경우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 19 조(성적평가 및 재수강) ①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69점 미만	0

② 성적등급이 C+ 이하는 재수강 할 수 있다.

제 20 조(학점인정) ①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학업성적은 C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다.

② 연구논문은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여 소정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특별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범위는 수료학점의 1/2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의 취득학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한 학생의 취득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⑥ 인턴연수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에 인턴연수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3-2-1-6 제2장 대학원

학점인정은 「인턴연수과정 내규」에 준한다.

제 20 조의2 (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한다.

②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9.01.>

제 21 조(수료시기)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22 조(수료증서 수여)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하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에 개설된 전공 3과목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연구생과정의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학위논문

제 23 조(학위청구자격) ①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 24 조(학위논문의 제출) 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학위논문의 심사)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의한다.

제7장 학위수여

제 26 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

격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

제 27 조(학위종별) ① 학위의 종별은 학생의 전공분야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구별된다. <개정 2008.9.1, 2008.11.15, 2009.9.1, 2009.11.13, 2012.10.26, 2013.11.1., 2014.10.1., 2015.10.01., 2017.12.01., 2018.11.16>

② 일반대학원은 학술편위, 경영대학원과 선교복지대학원은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9.1, 2008.11.15, 2013.11.1, 2014.10.1>

제 28 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 29 조(수여절차)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 30 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로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

제8장 연구생, 외국인 학생 및 교육과정공동운영

제 31 조(연구생) ①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입학울 허가할 수 있다.

②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자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격,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수료연구생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07.11.19>

제 32 조(전형방법) 각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이 있고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합격한 자

3-2-1-8 제2장 대학원

라야 한다.

제 33 조(교육과정공동운영 및 학위수여)① 본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교육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교육과정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직 제

제 34 조(조직) 각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부장과 각 학과의 주임교수를 둔다. 단, 필요시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11.19>

제 35 조(지도교수) 각 대학원에는 학생의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제 36 조(위원회 구성)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일반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 37 조(위원의 임기) 본 대학원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8 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01.>

1. 학생의 입학, 진학과 과정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규칙, 내규 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6.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

- 7.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 8.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9.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및 취소 <신설 2015.10.01.>
- 10. 대학원생 인권에 관한 사항 <신설 2018.09.01.>

제 39 조(소집)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 10 장 상벌

제 40 조(장학금) ① 대학원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 41 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11 장 학칙개정

제42조(학칙의 개정) ① 각 대학원의 학칙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발의 및 심의를 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된 학칙의 개정(제정·폐지)안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재가를 득하여 공포한다.

제 12 장 시행세칙 및 준용규정

제 43 조(시행세칙) 본 학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2-1-10 제2장 대학원

제 44 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서대학교 학칙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학칙의 폐지) 일반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디지털디자인대학원, 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학칙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① 종전의 일반대학원학칙, 경영정보대학원학칙, 디지털디자인대학원학칙, 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학칙에 의한 당해 대학원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한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각 대학원의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과 입학 및 편입학규정을 폐지하고, 내규로 전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의 수료연구생은 이 개정학칙 제 31조의 제2항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7조 2항에서 기존의 디자인&IT전문대학원 공학 계열 재학중인 학생들의 수료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7조는 2018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9.1, 2008.11.15, 2009.9.1, 2009.11.13, 2012.10.26, 2013.11.1, 2014.10.1., 2015.10.1. 2017.12.01., 2018.11.16.>

대학원 학위과정별, 계열별, 학과 및 정원 현황

과 정	대학원	계 열	학 과	정 원
박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일본지역연구과	17명
		공학계열	에너지/생명공학과 토목공학과 영상콘텐츠학과 컴퓨터공학과	
			예체능계열	
석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일본지역연구과 사회복지학과 영화학과 관광호텔마이스학과	70명
		자연과학계열	보건과학과 융합방사선학과	
		공학계열	에너지/생명공학과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영상콘텐츠학과 컴퓨터공학과	
			예체능계열	
	경영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경영학과	20명
	선교복지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과 기독교상담심리학과	24명
		예체능계열	교회음악학과	

[별표 2] <개정 2008.9.1, 2008.11.15, 2009.9.1, 2009.11.13, 2012.10.26, 2013.11.1, 2014.10.1., 2015.10.1. 2017.12.01., 2018.09.01., 2018.11.16.>

학위과정, 학과별 학위종별

1. 일반대학원

계열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인문사회	일본지역연구과	일본지역학석사	일본지역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영화학과	문학석사	
	관광호텔마이스학과	관광학석사	
지역과학	보건과학과	보건학석사 치위생학석사 작업치료학석사 임상병리학석사 간호학석사	
	융합방사선학과	이학석사	
공학	에너지/생명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축학과	공학석사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영상콘텐츠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예체능	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박사
	문화예술공연학과		예술학박사

2. 경영대학원

계열	학과	석사학위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학석사(000)

3. 선교복지대학원

계열	학과	석사학위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000)
	기독교상담심리학과	문학석사(000)
예체능	교회음악학과	음악학석사(000)

(서식 1)

석(박)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 대학원 학과의
석(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서대학교 00 대학원장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서 대 학 교 총 장 ○ ○ ○ ○ ○ ○ (직인)
박사

(서식 2)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대학원 연구과정 학과
에서 년 개월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동서대학교 00대학원장 ○ ○ ○ (직인)